

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30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4월 11일, 김용석(서초4)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4월 1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1년 6월 3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용석(서초4)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동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2조에서는 ‘이노스텔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
- 지정위원회의 구성사항 중 대학 전임교수에 대한 범위를 법규에 의거하여 명확히 규정하며, 이노스텔의 수시 지도점검 요건을 수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시 우수숙박시설인 이노스텔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4호).

- 지정위원회 구성사항 중 대학 전임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명확히 규정함 (안 제6조제4항제1호).
- 수시 지도점검에 대한 실시요건을 삭제하여 현 운영상황과 같이 상시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수정함(안 제14조제2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““이노스텔”이란 일반숙박시설중 외국인관광객 투숙에 적합한 시설물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시설을 서울시가 지정·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”고 한 것은 상위법령과 기존 조례에서 누락된 이노스텔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지만

조문 중 “일반숙박시설”이라는 표현이 우수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“서울시”라는 표현이 제1호의 조문과 상충되므로 ““이노스텔”이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갖추어 시가 지정·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”로 다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“개별기업”을 “개별숙박시설”로 한 것은 타당한 자구의 수정이라 판단됨.
- 동 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제1호에서 “대학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교육 경력이 있는 전임교수”를 “경제, 경영, 관광, 건축 또는 소비자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”으로 개정된 것은 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학 전임교수의 범위를 법규에 의거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.
-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시 지도점검 실시요건을 삭제한 것은 현 운영상황과 같이 상시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

- 안 제2조제4호를 ““이노스텔”이란 일반숙박시설중 외국관광객 투숙에 적합한 시설물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시설을 서울시가 지정·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”에서

““이노스텔”이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갖추어 시가 지정·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”로 수정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94관련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년 6월 30일
제출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서울시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정·하고 있는 “이노스텔”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동 조례에서 “이노스텔”을 정의한 용어 중에서 “일반숙박시설”이란 용어가 적정하지 못하여 “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”로 수정함(안 제2조제4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6조(품질평가기관) ① (생략) ② 품질평가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<u>개별기업</u>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,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제8조(지정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 ④ (생략) <u>1. 대학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교육 경력이 있는 전임교수</u> 2. ~ 3. (생략) ⑤ ~ ⑧ (생략)</p> <p>제14조(지도점검) ① (생략) ② (생략) <u>1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중앙언론에 보도된 경우</u> <u>2. 지정된 시설에 대한 민원이 2회이상 제기된 경우</u> <u>3. 민간소비자 단체, 유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</u> 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제2조(정의) 1. ~ 3. (생략) 4. <u>“이노스텔”이란 일반숙박 시설중 외국인관광객 투숙에 적합한 시설물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시설을 서울시가 지정·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제6조(품질평가기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.....<u>개별숙박시설</u>.....</p> <p>제8조(지정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<u>1. 경제, 경영, 관광, 건축 또는 소비자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지도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1. ~ 4. <삭제>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「<u>공중위생관리법</u>」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갖추어 시가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이노스텔”이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갖추어 시가 지정·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개별기업”를 “개별숙박시설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경제, 경영, 관광, 건축 또는 소비자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

제14조제2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“삭제”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 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6조(품질평가기관)</u> ① (생략) ② 품질평가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<u>개별기업</u>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,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<u>제8조(지정위원회의 구성 등)</u> ① ~ ③ (생략) ④ (생략) <u>1. 대학의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교육 경력이 있는 전임교수</u></p> <p>2. ~ 3. (생략) ⑤ ~ ⑧ (생략)</p> <p><u>제14조(지도점검)</u> ① (생략) ② (생략) <u>1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중앙언론에 보도된 경우</u> <u>2. 지정된 시설에 대한 민원이 2회이상 제기된 경우</u> <u>3. 민간소비자 단체, 유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</u> 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“이노스텔”이란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해 신고된 숙박업의 시설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갖추어 시가 지정·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<p><u>6조(품질평가기관)</u>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개별숙박시설</u>.....</p> <p><u>제8조(지정위원회의 구성 등)</u>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<u>1. 경제, 경영, 관광, 건축 또는 소비자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4조(지도점검)</u>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1. ~ 4. <삭제></u></p>